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25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정혜경·백승아·서미화

허성무 • 전종덕 • 이재강

김 윤·한창민·윤종오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음.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수는 233만명 (고용행정통계 24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단시간 노동자 또한 157만명(통계청, 22년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이며 그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

고 향상하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볼 때도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요구됨.

또한,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시행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원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

이에, 제11조와 제18조제3항을 삭제하여 이들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8조제3항 삭제 및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	<u><삭 제></u>
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	
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	
<u>을 적용할 수 있다.</u>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u>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u>	
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u> <신 설></u>	제14조의2(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4명 이
	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① · ② (생 략)
-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 <삭 제> 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 ② (현행과 같음)